



국 토 안 전 관 리 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기존 시설물(수문 외 2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7708(2021.09.16.)호의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와 우리 관리원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수문 외 2종)*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소관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문, 제방 및 방조제, 상수도
3.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으로 안내드리며, 개정 전문 및 신규대비표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붙임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7708(2021.09.16.) 1부.
2. 기존 시설물(수문 외 2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주요 개정사항 요약 1부. 끝.

국토안전관리원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지진방재정책과장),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진공학회

과장 김현국 국가내진센터장 지승구 생활시설본부장 전결 이종우

협조자

시행 국가내진센터-2433 (2021.09.27.) 접수 ()
 우 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예나로 128번길 24 국토안전관리원 / <https://www.kalis.or.kr/>
 전화 055-771-1560 / 전송 055-771-1563 / googy82@kalis.or.kr / 공개